
기간통신사업자 회계자료 제출 안내문

방송통신위원회는 『전기통신사업법』 제49조(회계정리)등 관련법령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계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. 해당 사업자는 2011 회계연도 회계자료를 2012년 3월 31일(토)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< 관련 법령 >

○ 전기통신사업법

- 제49조(회계정리) :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를 정리하고,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.

- 제53조제2항(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) :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9조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.

1.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2.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
3. 제4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장부 또는 근거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때

I. 영업보고서

- 제출대상 : 2011년 말 기준 기간통신사업자
- 제출자료 :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영업보고서
- 제출기한 : 2012년 3월 31일(토)까지
- 제출방법 : 방송통신위원회 회계정보 분석시스템(<https://fias.kcc.go.kr>) 을 통한 온라인 제출
- 문의사항
 - 회계정리 제도에 관한 사항 : 박지숙(02-750-2656)
 - 회계정보 분석시스템 입력에 관한 기술사항 : 정연정(02-750-2639)

II.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

- 제출대상 : 케이티(주)
- 제출자료 :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
- 제출기한 : 2011년 3월 31일(토)까지
- 제출방법 : 등기우편(공문포함) 및 전자 우편
- 제출처 및 문의
 - o 주소 : (110-777)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번지 방송통신위원회
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 시장분석팀
 - o 문의 및 전자우편 : 박지숙(02-750-2656, parkjs@kcc.go.kr)

III.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분담 및 연구개발부담금 산정 관련자료

- 제출대상 : 전기통신사업매출액 300억 이상 기간통신사업자
- 제출자료 :
 - o 보편적역무손실부담금 분담 관련 : 보편적역무손실분담 관련회계자료
 - o 연구개발부담금 산정관련 : 『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』
고시의 별표 자료

※ 제출양식은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(www.kcc.go.kr) 내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
- 제출기한, 제출방법, 제출처 및 안내
 - 위의 “II.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”와 동일

방 송 통 신 위 원 회